

【사건번호 2022-018】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 신청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 4종을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영리적 이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신청 데이터는 피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쓰일 용도로 작성된 교재 pdf 파일로, 해당 파일이 게시된 웹페이지에는 “본 교재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신청 데이터 PDF 파일에도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데이터의 저자나 발행인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함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6항 제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
- * 항공안전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수행
- **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제공하고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피신청인 제출 답변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신청 데이터는 최초 제출된 외부 강사진의 원고를 토대로 동일 과목을 담당한 강사들이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측 담당자가 파악한 저작권자는 외부 강사진이고, 이들 권리자들은 신청 데이터를 공단의 교육적 목적 외 상업적 이용하는 것에 반대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가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이 사건 데이터 4종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 호).

- 이 사건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 4종은 피신청인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의 강의자료 용도로 제작한 것으로, 각 과목에 해당하는 강의자료의 작성자(저작권자)는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들이며, 피신청인이 해당 작성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권리자들이 이 사건 데이터를 교육적 목적 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조정결과

- 상기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 성립